

국악고등학교 · 국악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4. 4. 14. ~ 4. 18. (5일간)

■ 감사반 : 감사담당관 등 6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10년 ~ 2014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천 원, 건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	모범 사례	현지 조치
					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14	-	-					3	6	1	1	3	-	-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(국악고등학교·국악학교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p>○ 종합예술관동 건립 추진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면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감독청(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)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, 감독청 건축승인 전에 공사를 착공 - 시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대리인(현장소장)으로 해당 공종과 관련 없는 기술자(굴삭기운전기능사)를 배치신고 하였는데도, 교체 조치 없이 승인 - 시공불량 사항(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, 단열재 부착시공 불량, 철근 피복두께 부족)에 대해 공사감독자(국악고 시설부장)는 시정·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<p>※ 종합감사 후 건축승인(2014.4.23.)을 득하고 공사 착공에 따른 법정 신고를 마침</p>	<p>○ 시정 및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공사를 추진한 관련자 ‘주의’ 요구 - 부적격 현장대리인 교체 및 시공불량 사항에 대한 보강·보완시공 하도록 ‘시정’ 요구
2	<p>○ 학교시설 안전점검 미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0년부터 2014년 감사일까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(「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조)에 따른 안전점검 미 실시 - 고등학교 예술관동 2~4층 계단실에 통로유도등 미설치 	<p>○ 시정 및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기관주의’ 조치 - 통로유도등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‘시정’ 요구
3	<p>○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노임 지급 관리감독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」에 따르면, 발주기관은 근로조건 보호관련 협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고, 용역업체는 조달청 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, - 용역업체(주그린존)와 근로자간에 계약한 근로계약서 상 총 노임이 5,145천 원이 적게 계약되어 낙찰률 이하로 지급되고 있음 <p>※ 201,945천 원(낙찰률 적용 노임)-196,800천 원(근로계약서 상 노임) = 5,145천 원(차액)</p>	<p>○ 시정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역근로자 노임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지급 하도록 ‘시정’ 요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												
4	<p>○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 업무 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(총사업비 2012년 93,200천원, 2013년 92,830천원) 관련 여행사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 - 2012년의 경우, 연수생(27명)들의 연수비 일부 부담금(1인당 1,600천원)을 학교회계로 세입, 세출처리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여행사에 직접 입금토록 함으로써 「국립 유치원 및 초·중등 학교 회계규칙」을 위반 -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을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(방학 등)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표]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 연도별 추진일정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44 1012 1112 1182"> <thead> <tr> <th>연도</th> <th>기간</th> <th>참가자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2</td> <td>10.27.~11. 4. (9일간)</td> <td>31명 (학생 27, 교사 4)</td> <td>미국 LA 소재 한국문화원 및 고등학교 방문, 교류 및 공연 등</td> </tr> <tr> <td>2013</td> <td>9. 8.~ 9. 17. (10일간)</td> <td>26명 (학생 21, 교직원 5)</td> <td>영국문화원, 스위스 인터라켄 공원, 프랑스 파리 한인 성당에서 공연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도	기간	참가자	내용	2012	10.27.~11. 4. (9일간)	31명 (학생 27, 교사 4)	미국 LA 소재 한국문화원 및 고등학교 방문, 교류 및 공연 등	2013	9. 8.~ 9. 17. (10일간)	26명 (학생 21, 교직원 5)	영국문화원, 스위스 인터라켄 공원, 프랑스 파리 한인 성당에서 공연 등	<p>○ 주의요구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엄중경고’ 조치 - 전통예술단 해외연수 및 공연을 수업결손이 없는 기간(방학 등)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‘통보’ 조치
연도	기간	참가자	내용											
2012	10.27.~11. 4. (9일간)	31명 (학생 27, 교사 4)	미국 LA 소재 한국문화원 및 고등학교 방문, 교류 및 공연 등											
2013	9. 8.~ 9. 17. (10일간)	26명 (학생 21, 교직원 5)	영국문화원, 스위스 인터라켄 공원, 프랑스 파리 한인 성당에서 공연 등											
5	<p>○ 학교회계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○○장이 지출원인행위 없이 개인용도로 학교회계 법인카드를 사용(7회, 359천원)하고, 추후 사비로 학교회계 통장에 입금 	<p>○ 주의요구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한 관련자(○○○○) ‘엄중경고’ 요구 - 운영지원과에 인사 조치를 강구토록 ‘통보’ 조치 												
6	<p>○ 학교발전기금 관리·운용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기금 예산 집행 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 법인카드로 학교발전기금을 집행 - 지출원인행위를 학교운영위 위원장이 아닌 학교장이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, 발전기금회계로 집행되는 공연 관련 계약을 학교운영위 위원장이 아닌 학교장이 체결 - 발전기금을 2013년 전공이습회 관련 교원격려금(50만원)으로 집행하는 등 목적외 사용 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기관주의’ 조치 												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7	<p>○ 국악예능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불합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재교육생 선발을 위한 실기 평가를 하면서 거문고· 대금· 타악 등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자들의 실기 평가 점수를 단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발(20명) - 영재교육생 선정심사위원을 거문고, 대금 등 4~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실기평가를 시행, 타악, 민요, 피리 등의 분야는 비전문가가 평가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저하 	<p>○ 주의 및 개선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기관주의’ 조치 - 영재교육생 선발을 지원 분야별로 평가·선발하고, 실기 평가위원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원생의 실기 평가를 하도록 ‘개선’ 요구
8	<p>○ 공연사례비 집행방안 강구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기관·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등에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악 또는 무용 공연단이 출연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 주최기관에서 지급하는 공연사례비 62,463천 원(2014. 4월 현재)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집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	<p>○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사례비를 학생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집행방안을 강구하도록 ‘권고’ 조치
9	<p>○ 학교 조명 등기구 교체 부적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,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교체토록 되어 있으나, - 학교는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해, 조도개선 공사계약(18,691천 원)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(‘12.1.18~2.7)하면서, 조명 등기구(155개)를 관련규정에서 정한 제품(LED조명)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지 않고 일반 조명 등기구로 교체하였음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‘통보’ 조치